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11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회계 및 결산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시한을 60일전까지로 하였으며,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은 매 2년마다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·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함.
- 수탁기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가능토록 하였음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 가능(안 제4조)
- 수탁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계연도 20일전을 60일전까지로 조정(안 제8조)
-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을 매2년마다 하는 것을 필요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
-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중 “5년으로 하되”를 “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중 “20일”을“60일”로 하고, 동조제4항중 “2개월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중 “매2년 마다”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·수탁기간은 <u>5년</u> 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. ③(생략) ④(생략) ⑤(생략) ⑥(생략)	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</u> ③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 ⑤(현행과 같음) ⑥(현행과 같음)
제8조(회계 및 결산) ①(생략) ②수탁자는 매년 정부회계 연도 개시 <u>20일</u> 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,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(생략) ④수탁자는 정부회계 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후 <u>2개월</u>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8조(회계 및 결산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60일</u> ③(현행과 같음) ④..... <u>60일</u>
제9조(보고 및 감독)①(생략) ②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<u>매2년</u> 마다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③(생략)	제9조(보고 및 감독)①(생략) ②..... <u>(삭 제)</u> ③(생략)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·제35조 및 「의료법」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(이하“병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병원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
2. 치매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
3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
4.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
5. 치매에 대한 교육·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
6. 기타 노인성질환자에 관한 사항
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병원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1. 의료법인(단,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)
2.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의료법인의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)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·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.
- ③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④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- ⑤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⑥제5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의 손·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의료수가) ①병원의 운영에 있어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의료급여법」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·증축·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·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 및 결산) ①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,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매년 정부회계 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,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④수탁자는 정부회계 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 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고 및 감독)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 운영이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, 장부,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

②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, 수탁자는 기간내 시정·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·수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·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·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
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